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난지물재생센터 3차(총인)처리시설 설치사업(장기-1차)]

- 점검일시 : 2022.12.13 (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박찬표,정진혁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슬러지 저류조의 시스템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 중으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되었으며,
 - 고소 작업(H=5m) 중인 다수의 작업자가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작업 중이며,
 - 시스템 동바리 작업 구간은 작업 발판 고정 미흡 및 연속되지 않아 근로자가 불안정하게 이동하고 있어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음.
 - 고소 작업 안전대 부착설비설치 및 근로자 안전대 착용 철저히 후 작업시행 바람.
- ※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미이행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(가설 통로의 구조),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, 제56조(작업발판의 구조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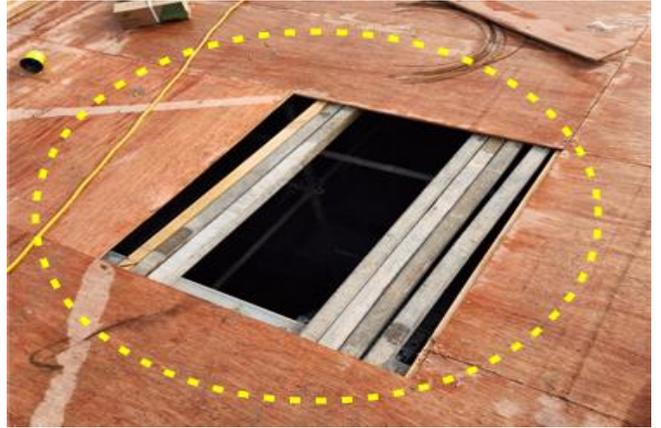
- 슬러지 저류조 상부 개구부는 근로자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호조치 바람.

- 하수박스 방수공사 구간 작업 면 반대편 안전 난간 재설치하고,

- 하수박스 공사 전체구간 해치 발판이 설치된 작업대는 이동 후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덮개를 닫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련 작업자 전체 재발 방지 교육 및 철저한 관리 요망

※ 위험성평가 권고사항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(안전 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조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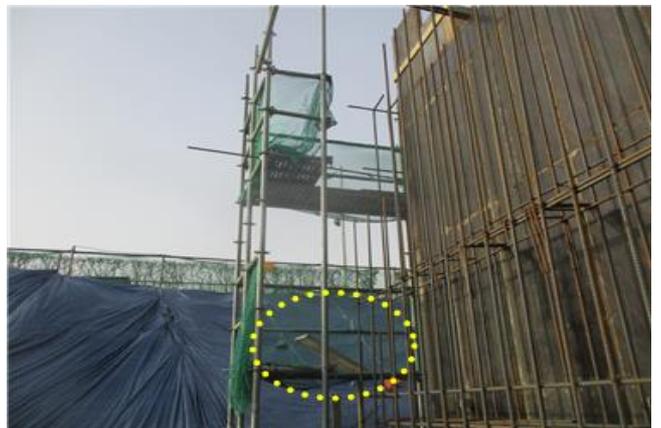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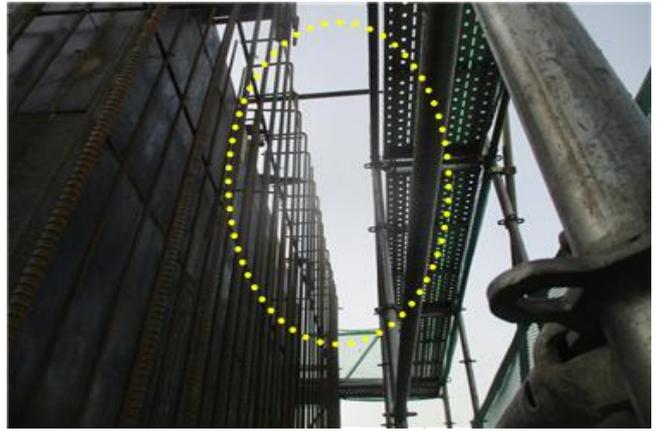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하수 박스 지하수 유출구간 인접 구조물 공사는 작업 발판에서 최상부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시스템 비계 통로 단부는 폐합하여 관리 요망

※ 위험성평가 권고사항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슬러지 저류조 근로자가 철근 사이로 무리하게 이동 중 끼임에 의한 아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니, 재발 방지를 위한 근로자 교육 시행 바람.
- 하수 박스 공사 진행 방향 구간 내 토공 가설계단 등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사면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외부에서 작업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 확보 요망
- ※ 위험성평가 권고사항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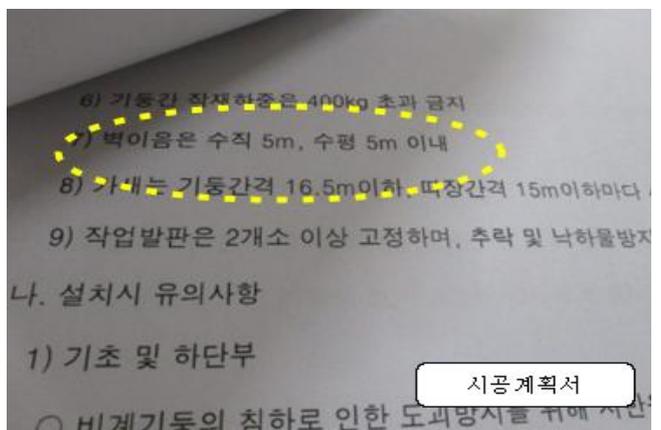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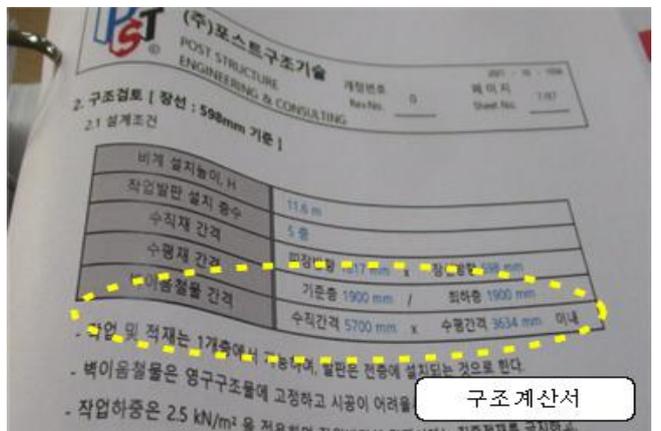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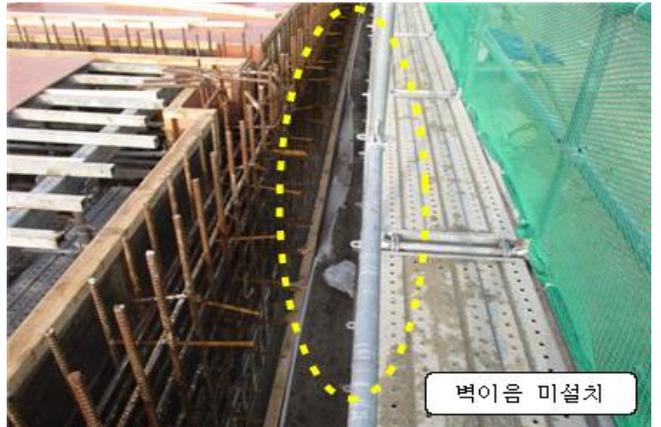


○ 가설비계 안전(방재시설부)

- 슬러지 저류조 가설비계가 흔들림이 있으며, 벽이음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 있으며,
- 벽이음 설치간격이 구조계산서는 수직5.7m, 수평3.6m, 시공계획서는 수직5m, 수평5m, 안전관리계획서는 구조계산서와 같이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는 바,
- 상호모순된 계획은 일치하고, 벽이음 견고히 설치 후 작업시행 바람.

※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미이행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(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)

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방재시설부)

- 굴착 구간 평면상 경사 방향으로 설치된 개소는 하중 집중점에 분력이 발생하여 밀릴 수 있으므로 밀리는 방향에 방지 조치 보완 요망
- ※ 위험성평가 권고사항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(붕괴 등의 위험 방지)



○ 기계기구 안전(방재시설부)

- 현장에서 사용 중인 철근가공기는 사용 전 점검 후 점검필증 부착하고, 정기적으로 점검 바람,
- 외함 접지봉의 지중 매입이 부족하거나, 접지선을 철근에 매달아 설치하여 접지저항 부족에 따른 근로자 안전사고 우려되니 보완 후 작업 바람.
- ※ 위험성평가 권고사항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·위험 방지 업무 등),
- 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3.2.3 기계기구 안전



○ 건설기계 안전(방재시설부)

- 하수 박스 공사 구간 중 지하수 유출지역 굴착기 2대는 실명제를 시인성 있게 부착하고,
- 노란색 굴착기(10)는 궤도 장력을 재긴장하고,
- 주황색 굴착기(02)는 후방충돌방지봉을 후방에 설치한 상태로 작업 요망
- ※ 위험성평가 권고사항


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 감독자의 유해·위험 방지 업무 등),
- 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3.2.2 건설기계 안전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굴착 구간 배면의 위험물 보관소에는 공간이 부족하여 운반용 케이지에 잔여량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위험물 보관소를 추가 배치하여 관리요망

- ※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미이행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(위험물 등의 보관)

